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·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

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0조의2”를 “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제61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그 밖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- 별표 2 제2호 표의 머목2)의 과태료 금액과 같은 호 서목2)의 과태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5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란 중 “3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한다.

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

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300	400	5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 및 제61조

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)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생략) <신설>	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)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·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
제32조의2(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. 1. ~ 6. (생략)	제32조의2(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	제3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 ① -----

현행	개정안
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1.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1조(기금사업)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 1. ~ 17. (생략) <신설> ② (생략)	제61조(기금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그 밖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-2011